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구 보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의장
람	

제1552호 2020. 10. 26(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7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78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안 입법예고 ---------- 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610호 보상계획열람공고 ---------- 1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619호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 18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홍보정책과 [032-560-4146]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17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0.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중봉대로 1538 외 1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10.26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0-10-26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350-3, 350-11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1538 (금곡동)	20090706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금산 싸움에서 7백 의병과 함께 전사한 조헌선생의 호를 따서 제명	
2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72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27번길 27 (가좌동)	20090706	원적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14-2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67번길 8-1 (청라동)	20120330	청라한울로의 시작점에서 6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55-1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61번길 21 (청라동)	20140804	청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및 청라한내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36-9	인천광역시 서구 비즈니스로182번길 12 (청라동)	20201012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0-10-26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245 (원창동)	도로명주소 폐지요청	20090922	인천의 대표적 항구인 북항을 지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318번길 42-9 (가좌동)	건물말소	20090922	건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1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318번길 42-7 (가좌동)	건물말소	20090922	건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1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318번길 46-8 (가좌동)	건물말소	20090922	건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1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318번길 46-10 (가좌동)	건물말소	20090922	건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1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빌주택
6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608번안길 2 (당하동)	철거	20081231	원당대로608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되어있는도로	경인소재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0 - 1578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0.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대규모 재난현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안 제3조)

○ 지원단의 구성(안 제4조)

- 공동단장(자원봉사 업무 부서장, 자원봉사센터장) 및 단원

○ 실무팀의 편성(안 제6조)

○ 지원단의 설치(안 제7조)

○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안 제8조)

○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 총무과 전화 560-4514, 팩스 560-271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대규모 재난현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안 제3조)
○ 지원단의 구성(안 제4조)
  - 공동단장(자원봉사 업무 부서장, 자원봉사센터장) 및 단원
○ 실무팀의 편성(안 제6조)
○ 지원단의 설치(안 제7조)
○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안 제8조)
○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 : 2020. 10월 중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단장을 다르게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지원팀

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제6조제2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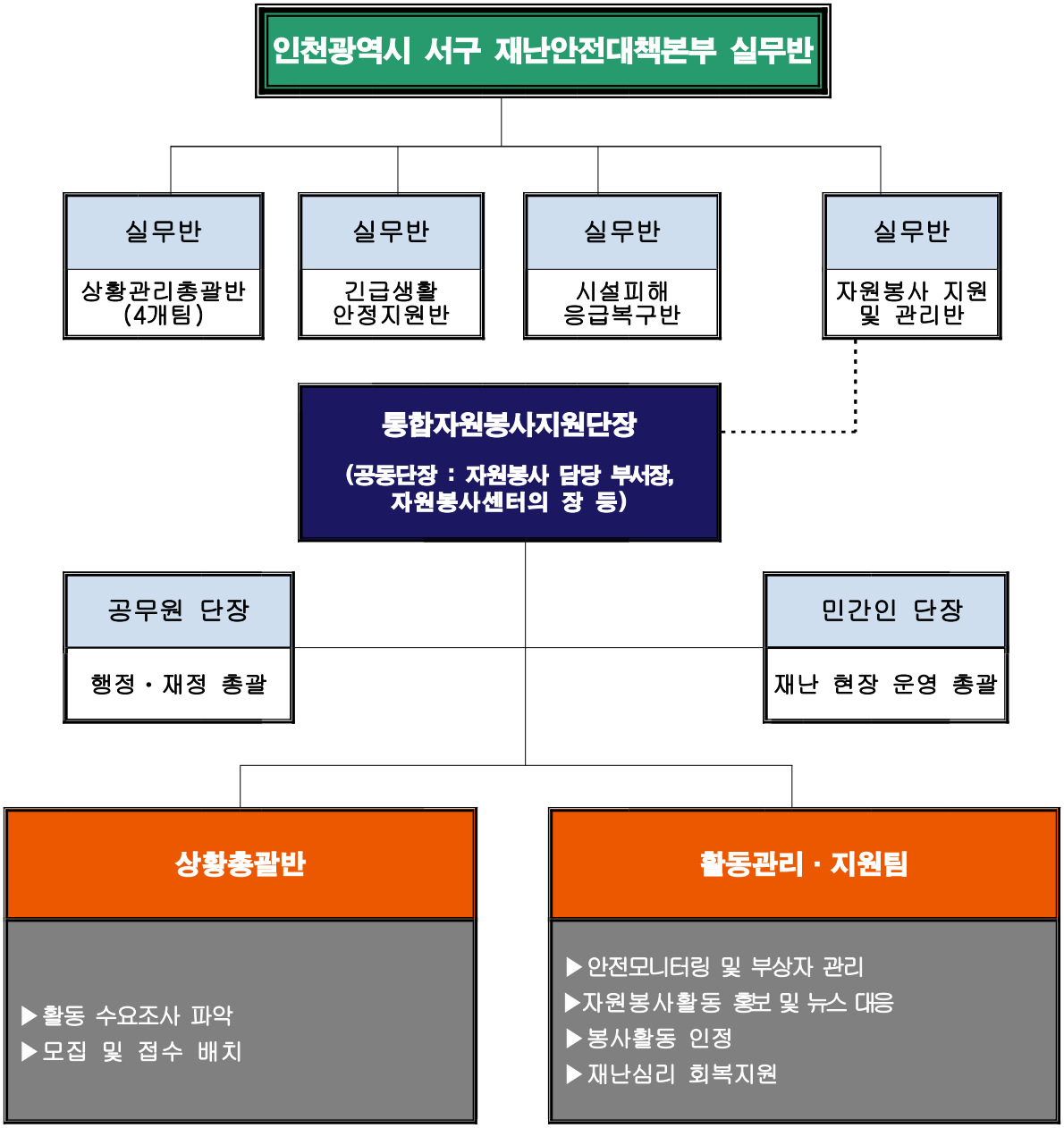

[별표2]

지원단 운영 표준 업무 구성(제6조제2항 관련)

팀 명		직 위	담당 사무
공무원단장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행·재정 지원사항 총괄 ▸ 기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 관련 사항 지원
민간인단장		서구자원봉사센터장	▸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총괄
실무팀	상황총괄팀	서구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팀장)	▸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자원봉사 담당부서의 팀장	▸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연계 (상황 공유·보고 등)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홍보 총괄
	활동관리 지원팀	서구자원봉사센터 팀장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총괄
		서구자원봉사센터 운영요원1	▸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장비 소요 파악 ▸ 재난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사항 총괄
		서구자원봉사센터 운영요원2	▸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 봉사활동 기록 및 피해자 불편사항 접수
		서구자원봉사센터 운영요원3	▸ 봉사활동 인정(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

·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사무를 정한다.

[관 계 법 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등록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시행일 : 2020. 6. 4.] 제17조의2

의 견 제 출 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0-1610호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상동소하천 재해예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을 열람하시어 이의가 있으신 경우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0.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상동소하천 재해예방사업

□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25-1번지 ~ 검암동 32번지

□ 시 행 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사업기간: 2020.7.6. ~ 2021.12.31.

□ 규 모: L=0.24km, A=3,503m2

□ 주요내용: 하천확폭(B=7m 확보), 축제 262m, 교량재가설 1개소 등

2. 열람 및 이의신청서 제출 기간 및 장소

□ 기간: 2020. 10. 26. ~ 2020. 11. 13.(19일간)

□ 장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23(세민빌딩 2층), 서구청 생태하천과 하천팀(☏032-560-4537)

3. 대상토지 및 물건

▢ “붙임”으로 갈음하며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 보상대상 내역은 추후 확정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사유 등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이의신청방법

▢ 공고 또는 통지된 토지조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생태하천과에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경과 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보상시기

▢ 보상협의 착수일 ~ 보상 대상물건의 취득을 위한 계약체결 시까지

▢ 2020. 11. ~ 12.중 개별 통지 예정

6. 보상방법

▢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시·도지사(인천광역시장) 및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3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산정하며 세부 보상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은 감정평가 후 별도 통보합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

상대상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과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인천광역시장 또는 토지소유자가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합니다.

7.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업자 추천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개별 협의

○ 협의 시: 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 보상금지급

○ 협의 불가 시: 수용재결 → 보상금 지급(공탁) → 소유권이전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및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등 재결 관련기관으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8. 기타사항

□ 본 공고에 포함된 토지는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시천검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구역 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사업 추진경과 및 지적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보상일정 및 열람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나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통지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생태하천과(☏032-560-453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1619호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 시행하는 서곶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0. 9. 25.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재결서 정본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소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20. 10.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서곶근린공원 조성사업
2. 사 업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산20번지 일원
3. 사업 시행자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4. 서류의 종류 및 명칭 : 수용재결서 정본(사본)
5.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 032-560-4494)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 4층)
6.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7. 공시송달 사유 : 수취인 불명 등
8.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20. 10. 26. ~ 2020. 11. 9. (15일간)

9. 기타

가. 손실보상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제3항에 따라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없이 같은 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나.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수령 시 청구서 등에「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이라고 기재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다루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음

[붙임]

□ 공시송달 대상

순번	공시송달 대상자		사 업 명	사업시행자	재결일
	성 명	주 소			
1	이*덕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210 (인천광역시 서구 경정 210)	서곶근린공원 조성사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2020.09.25.
2	동*기업주식회사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28-10 현대해상화재보험빌딩 5층	서곶근린공원 조성사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2020.09.25.